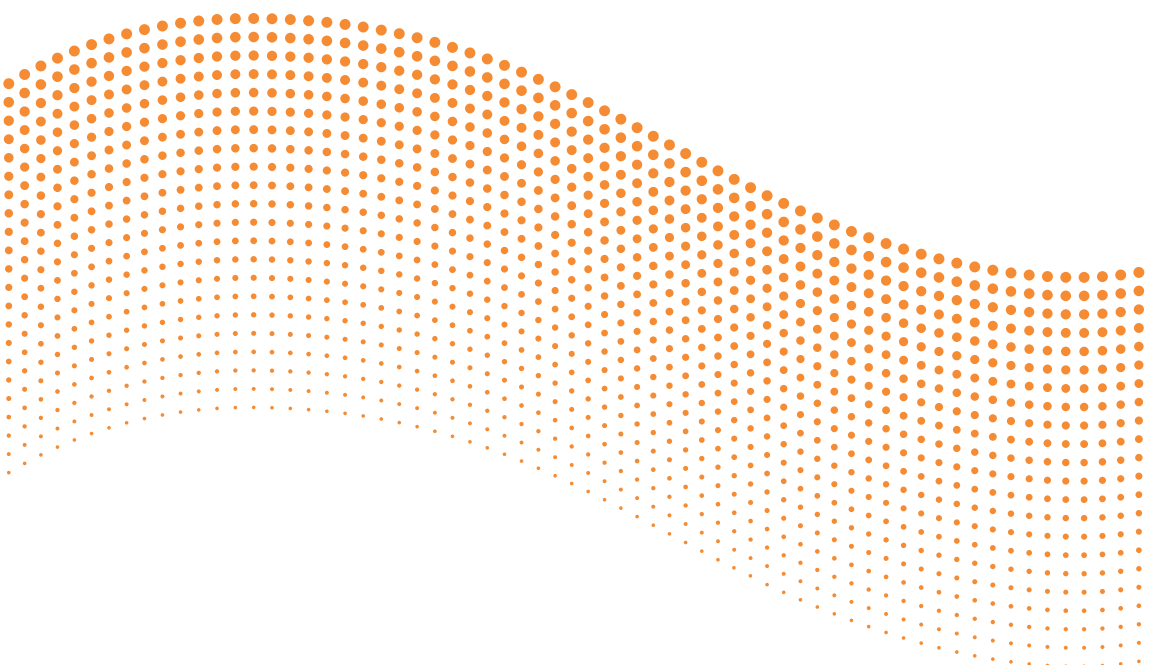


20  
25

외국투자가를 위한  
환경정책가이드



20  
25

외국투자가를 위한  
환경정책가이드



## 환경오염물질·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 대기환경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004
- 2.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설치 허가(신고)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009
- 3. 비산배출시설/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012
- 4.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운영 ..... 018

### 물환경

- 5.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020
- 6. 비점오염원 설치 및 운영 ..... 027

### 생활환경

- 7.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029
- 8.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032

### 잔류성오염물질, 토양, 폐기물

- 9.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034
- 1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및 운영 ..... 035
-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 036

### 통합환경허가

- 12. 배출시설 등 통합 허가 및 운영 ..... 040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1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 및 이행..... 048

# 2025 외국투자가를 위한 환경정책가이드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등 취급하는 기업

1.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052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인·허가 및 준수사항	063
2-2. 화학물질 및 폐기물 수출·입 절차	079
3.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083
4.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	088

## 부 록

1. 환경행정절차 요약	091
2. 환경분야 주요 영업	096
3. 환경분야 주요 지원사업	098
4. 표시광고 시 유의	099
5. 순환자원 인정·지정	101
6. 주요 환경정보 누리집	103

## 본문 중 용어

환경청(장)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거나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도(지사)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장)을 말함  
시군구청장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시, 군, 구(의 장)

# I 환경오염물질·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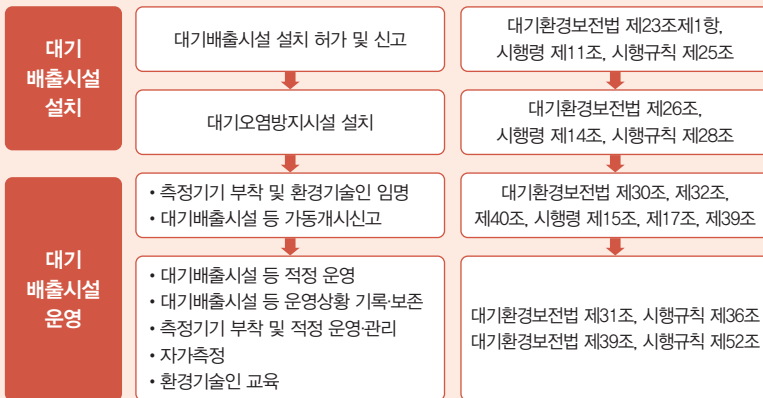
## 대기환경

###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sup>1)</sup> 설치 및 운영

#### 1. 관리 개요

- 연소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동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 운영하여야 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체계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참고]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분류**

- 환경부는 대기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 분류(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
- 사업장 분류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

종별	오염물질발생량 구분
1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이상인 사업장
3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이상인 사업장
4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이상인 사업장
5종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미만인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임

**2. 대기 배출시설 인·허가**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종류에 따른 인허가 구분

		구분	인허가 종류	
배출 시설	동일배출구	이종시설 설치	허가(신고)	
		총 규모의 10% 이상 동종시설 증설 및 교체	변경허가 (신고)	
		총 규모의 10% 이상 폐쇄	변경신고	
	다른배출구	신규시설 설치(기준규모 미만 시설 설치로 사업장 내 동종시설 총 규모가 기준규모 이상인 경우 포함)	허가(신고)	
		폐쇄	변경신고	
	방지시설 설치 면제	증설·교체 또는 총 규모의 10% 이상 폐쇄	변경신고	
		총 규모의 10% 미만 폐쇄	변경신고 제외	
			용도추가	변경허가

구분		인허가 종류	
방지사설	증설·교체·폐쇄	변경신고	
연료 변경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으면서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또는 황 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	변경신고 제외	
	그 외의 경우	변경신고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신고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8의2 허가기준 미만 특정대기 유해물질, 일반대기오염물질	변경신고
	허가 사업장	시행규칙 별표 8의2 허가기준 이상 특정대기 유해물질	허가
	허가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또는 일반대기오염물질	변경신고

• 설치허가·신고 대상시설

구분	대상시설
설치허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li> <li>2.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않는 배출시설로서 5중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됨</li> </ol>
변경허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li> <li>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li> <li>3. 설치허가 시설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li> <li>4. 설치허가 시설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시행규칙 별표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 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li> <li>5.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 1~4호의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li> </ol>

구분	대상시설
<b>설치신고</b>	1.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이외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b>변경신고</b>	<p>1. 설치허가 배출시설의 변경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li> <li>나.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li> <li>다.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li> <li>라.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li> <li>마.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li> <li>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li> <li>사.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li> </ul> <p>2. 설치신고 배출시설의 변경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같은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li> <li>나.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li> <li>다.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li> <li>라.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li> <li>마.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li> <li>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li> <li>사.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li> </ul>
<b>변경신고 제외</b>	<p>1. 기존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 총 규모의 10% 미만으로 증설·교체·폐쇄하는 경우로 다음을 만족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li> <li>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li> </ul> <p>2.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p>

- 대기배출사업장 인·허가 절차
  - 인허가권자 :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
  - \*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에 한함

###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절차도

업무절차	고려사항
<b>인·허가 신청서 접수 (사업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호서식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시행령 제11조 제3항)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li> <li>• 원료(연료)의 사용량 및 오염물질 예측 배출량</li> <li>•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li> <li>• 방지시설의 일반도</li> <li>•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li> <li>• 연료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예측명세서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li> </ul>
<b>서류의 검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배출시설에 한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별검토(대기배출시설의 확인)</li> <li>• 업종별 배출가능 오염물질</li> <li>• 공정별 배출물질과 적용 가능한 방지시설</li> <li>• 적용가능한 방지시설의 적정성</li> <li>• 방지시설의 면제 가능 여부</li> <li>• 전국 연료규제/대기관리권역 현황</li> <li>•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li> <li>• 대기배출시설의 입지에 관한 타법 검토 등</li> </ul>
<b>허가/신고 수리 (관할 행정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li> </ul>
<b>↓ 10일 이내</b>	
<b>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사업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시설의 설치</li> <li>• 방지시설 및 공동방지시설의 설치</li> </ul>
<b>가동개시 신고 (사업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측정기기의 부착</li> <li>• 환경기술인 임명</li> <li>• 가동개시의 신고</li> </ul>
<b>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사업자)</li> <li>•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자가측정 실시 등(사업자)</li> <li>•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지자체)</li> </ul>

## 2 ·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 설치 허가(신고)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 1. 관리 개요

- (개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설치 전 사업장 단위(workplace)로 허가(신고)
  - 운영 시에는 연도별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을 방지시설을 설치·개선 또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

#### [참고]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1)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 (허가대상 사업장) 관리대상 오염물질 중 하나 이상의 연간 배출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의3에 따른 1·2·3종 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 △질소산화물(NOx) 4톤 △황산화물(SOx) 4톤 △먼지(TSP) 0.2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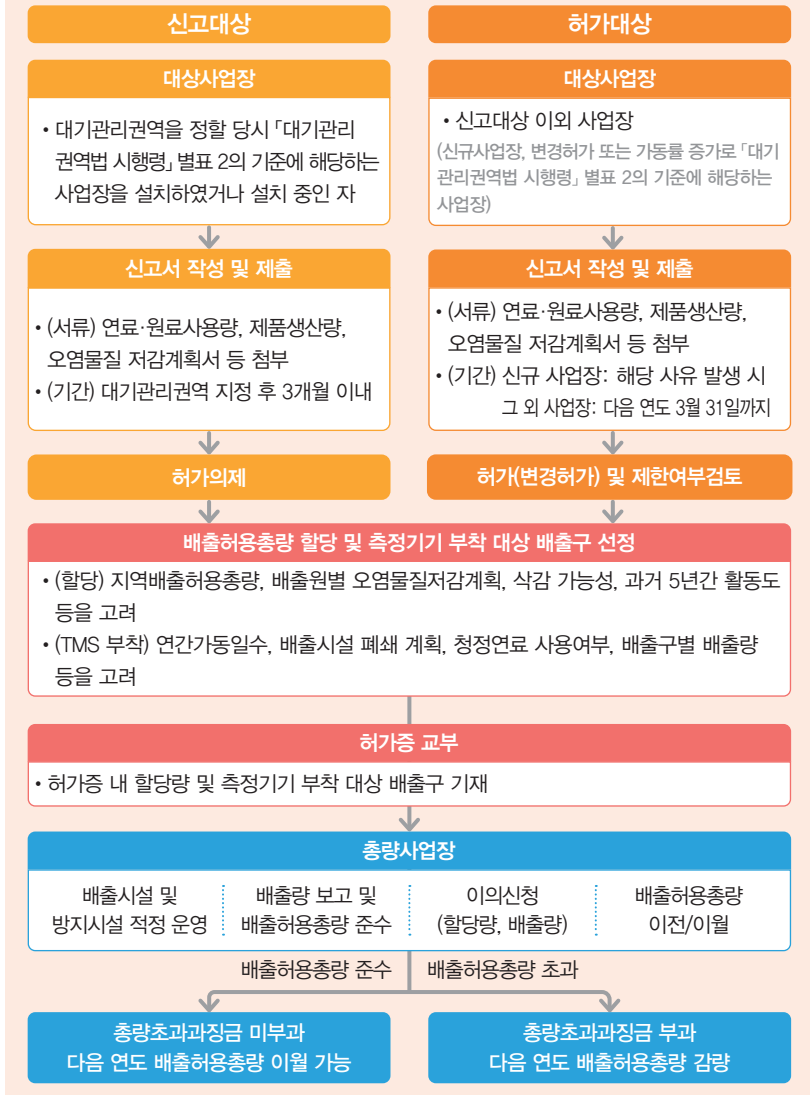


## 2. 사업장 설치 허가·신고

- 담당 기관 : 대기 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기관\*과 동일

\* 환경오염시설법 제6조 적용 사업장(통합관리사업장) : 환경부장관(환경청장에게 위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적용 사업장(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사업장) : 시도지사

### 대기오염 총량관리 사업장에 대한 허가신고 및 관리 흐름도



### 3 · 비산배출시설/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1. 비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특정 업종에서 굴뚝이 아닌 대기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경청장에게 신고

#### 비산배출시설 관리체계



#### [참고] 비산배출 저감 대상 업종별 관리물질

(관리시설 등 상세 : 시행규칙 별표10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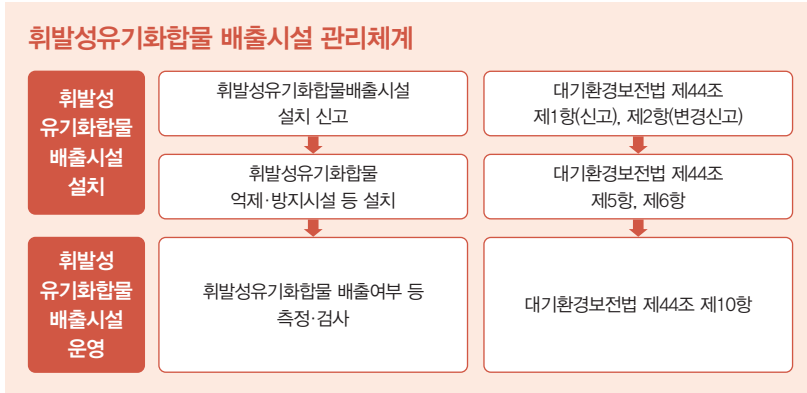
분류	업종	업종별 적용물질	공동 적용물질
가. I 업종	1) 원유 정제처리업 2) 파이프라인 운송업 3) 위험물품 보관업	메탄올, 메틸에틸케톤, 엠티비이(MTBE, Methyl Tertiary Butyl Ether), 톨루엔, 자일렌 (o-, m-, p- 포함)	별표 2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
	4)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5) 합성고무 제조업 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나프탈렌	
나. II 업종	1) 제철업 2) 제강업	입자상물질(먼지), 망간화합물, 톨루엔, 자일렌(o-, m-, p- 포함)	

분류	업종	업종별 적용물질	공통 적용물질
다. III업종	1)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톨루엔, n-헥산, 이소프로필 알콜, 메탄올, 아크릴산 에틸, 메틸에틸케톤	별표 2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
	2)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톨루엔, 메틸에틸케톤, 자일렌 (o-, m-, p- 포함)	
	3)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4)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5)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7)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8)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0)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1)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2) 축전지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 (o-, m-, p- 포함)		별표 2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특정대기유해물질
13)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14)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6)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7)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톨루엔, 자일렌 (o-, m-, p- 포함), 메탄올	
18)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제조업			
19) 강관 제조업			
20)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1)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2)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3)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4)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5)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조업			
26)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27) 자동차 중고 부품 재제조업			
28)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라. IV업종	1) 강선 건조업	톨루엔, 자일렌 (o-, m-, p- 포함)	
	2)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3) 기타 선박 건조업		

- 1) 위 표의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에 따른 업종임
- 2) 저유소는 저장시설과 육상출하시설 시설관리기준만 적용받으며, 저유소의 출하 시설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내의 시설과 이 지역에 유류를 공급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지역에서 동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의 장(이하 '대도시시장')에게 신고



### [참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지역

구분	대상 지역																					
특별대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광역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li> <li>•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li> </ul>																					
<b>대기관리권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li> <li>•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권역</th> <th>지역구분</th> <th>지역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수도권</td> <td>서울특별시</td> <td>전 지역</td> </tr> <tr> <td>인천광역시</td> <td>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td> </tr> <tr> <td>경기도</td> <td>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td> </tr> <tr> <td rowspan="5">중부권</td> <td>대전광역시</td> <td>전 지역</td> </tr> <tr> <td>세종특별자치시</td> <td>전 지역</td> </tr> <tr> <td>충청북도</td> <td>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td> </tr> <tr> <td>충청남도</td> <td>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td> </tr> <tr> <td>전북특별 자치도</td> <td>전주시, 군산시, 익산시</td> </tr> </tbody> </table>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특별 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특별 자치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구분	대상 지역		
<p><b>대기관리권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li> <li>•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li> </ul>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남부권	광주광역시	전 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제외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p>위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sup>2)</sup>하는 지역<sup>3)</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 용인시, 경기 화성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li> </ul>		

**[참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 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5-125호)

구분(업종)	배출시설	
	시설명	규모
석유정제 및 석유 화학제품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li> <li>• 저장시설</li> <li>• 출하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시설</li> <li>• 저장용량 40m<sup>3</sup> 이상</li> <li>• 모든 시설</li> </ul>
저유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장시설</li> <li>• 출하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장용량 20m<sup>3</sup> 이상</li> <li>• 모든 시설</li> </ul>

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규제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6-74호)

3) 동 지역은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과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만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구분(업종)	배출시설	
	시설명	규모
주유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장시설</li> <li>주유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장용량 20m<sup>3</sup> 이상</li> <li>저장시설 저장용량 20m<sup>3</sup> 이상</li> </ul>
세탁시설 <sup>4)</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탁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리용량 30kg 이상(합계)</li> </ul>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응시설</li> <li>혼합시설</li> <li>희석신나 제조시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li> <li>유류저장시설</li> <li>페인트저장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적 3m<sup>3</sup> 이상</li> <li>용적 3m<sup>3</sup> 이상</li> <li>용적 5m<sup>3</sup> 이상 또는 동력 50마력 이상</li> <li>저장용량 10m<sup>3</sup> 이상</li> <li>저장용량 50m<sup>3</sup> 이상</li> </ul>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10m×10m 이상 대형구조물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li> <li>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li> <li>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 저장시설</li> <li>유류저장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적 1m<sup>3</sup> 이상</li> <li>용적 5m<sup>3</sup>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li> <li>저장용량 10m<sup>3</sup> 이상</li> <li>저장용량 10m<sup>3</sup> 이상</li> </ul>
자동차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장용량 10m<sup>3</sup> 이상</li> </ul>
기타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li> <li>유류, 유기용제 및 유기용제 함유 물질 저장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적 1m<sup>3</sup> 이상</li> <li>저장용량 10m<sup>3</sup> 이상</li> </ul>
폐기물보관·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따른 폐유, 폐유기용제 및 폐농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관시설</li> <li>파쇄·분쇄·절단시설</li> <li>소각시설</li> <li>고온열분해시설</li> <li>건류시설</li> <li>용융시설</li> <li>증발·농축·반응시설</li> <li>정제시설</li> <li>유수분리시설</li> <li>응집침전시설</li> <li>건조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장용량 10m<sup>3</sup> 이상(합계)</li> <li>동력 20마력 이상</li> <li>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li> <li>1일 처리능력 5톤 이상</li> <li>1일 처리능력 5톤 이상</li> <li>동력 10마력 이상</li> <li>1일 처리능력 5톤 이상</li> <li>1일 20kW 이상</li> <li>1일 처리능력 5톤 이상</li> <li>1일 처리능력 5톤 이상</li> <li>1일 처리능력 0.15m<sup>3</sup> 이상</li> </ul>

4) 물세탁기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

### [최근개정, 기타] 비산배출시설 관리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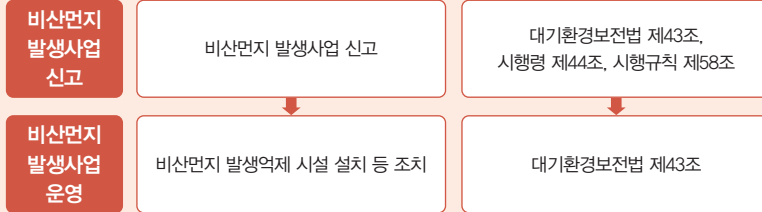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4.1.1. 시행)

- (개정) 플레어스택 시설관리기준 개선(별표 10의2 개정) :  
 △발열량 기준 준수 시 광학가스탐지카메라 이용한 불안전연소 감시는  
 필요시 선택 △발열량 기준 변경(단위환산) 등\*
  - \* (예시) 3호가목2)다)(1)  $2,403\text{kcal}/\text{Sm}^2$ (270BTU/Sft3)
  - ➔  $2,579\text{kcal}/\text{Sm}^2$ (290BTU/Sft3),  $\text{Sm}^2$ 에서의 표준상태는  
 당초 미국표준상태(25°C, 1atm)에서 한국표준상태(0°C, 1atm)로 개정
- (기타) 비산배출시설관리시스템(haps.nier.go.kr) 운영(23.3.17.~) :  
 종전 서면으로 실시하던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연간보고 등  
 관리를 전산화, 사업자는 신고 내역 및 이력 등을 손쉽게 확인

## 4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운영

-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비산먼지 발생사업')으로서 신고대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행 전에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비산먼지 발생사업 관리체계



### [참고] 신고대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li> <li>· 콘크리트제품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회제조업</li> <li>· 플라스터 제조업</li> </ul>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사석광업(아직면적 100㎡ 이상 골재보관·판매업 포함)</li> <li>·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li> <li>· 내화요업제품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도자기제조업</li> <li>·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li> <li>·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li> <li>·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li> <li>· 건설폐기물처리업</li> </ul>
제1차 금속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주조업</li> <li>· 제철 및 제강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철 및 제강업</li> </ul>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비료제조업</li> <li>· 배합사료제조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합사료제조업</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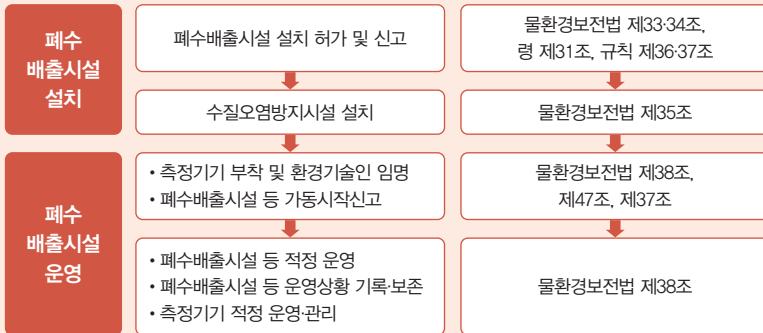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사업
건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축조공사 (건축물의 증개축, 재축 및 대수선 포함, 연면적 1,000㎡ 이상)</li> <li>• 토목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1,000㎡ 이상 또는 총연장 200m 이상</li> <li>- 굴정(구멍 뚫기) 공사의 경우 총 연장 200m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이 200㎥ 이상</li> </ul> </li> <li>• 조경공사(면적 합계 5,000㎡ 이상)</li> <li>• 지반조성공사 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 3,000㎡ 이상), 토공사 및 정지공사(면적합계 1,000㎡ 이상),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면적 합계 1,000㎡ 이상</li> <li>• 도장공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 외부 도장공사)</li> <li>• 그 밖에 위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상기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li> </ul>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고철 운송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고철의 운송업</li> </ul>
운송장비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선제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li> <li>•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li> <li>• 그 밖에 선박건조업</li> </ul>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전업</li> <li>•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li> <li>•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li> </ul>
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상화물취급업</li> </ul>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속처리업</li> <li>• 구조금속제품 제조업</li> </ul>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사업</li> <li>•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및 폐기물종합처분업</li> </ul>

## 5 · 폐수배출시설<sup>5)</sup> 설치 및 운영

### 1. 관리 개요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 할 때에는 동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도지사에게 가동시작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가동시작신고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 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을 항상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동 시설의 운영상황을 사실대로 기록·보존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관리체계



5)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4)

## 2.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 설치허가·신고 대상시설

구분	대상시설
<b>설치허가</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sup>6)</sup>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허가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li> <li>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li> <li>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sup>7)</sup>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li> <li>4.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효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li> <li>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효거리 15km 이내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li> <li>6. 설치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새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li> <li>7.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환경부령<sup>8)</sup>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설치 가능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li> </ol>
<b>변경허가</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또는 1일 700m<sup>3</sup> 이상 증가</li> <li>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m<sup>3</sup> 이상 증가</li> <li>3.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 필요</li> <li>4. 허가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고체상태의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변경 필요</li> </ol>

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별표 13의2

7) 금강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시설 지정(환경부고시 제2018-6호)

8)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구분	대상시설	
설치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대상 폐수배출시설(1~6) 외의 폐수배출시설</li> <li>• 허가대상 폐수배출시설(1~6)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허가대상 지역 또는 구역(2~5) 밖에 있는 경우</li> <li>• 허가대상 폐수배출시설(2~5)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li> </ul>	
변경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 (변경허가 대상은 제외)</li> <li>•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 변경</li> <li>•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 (변경허가 대상은 제외)</li> <li>•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 변경</li> <li>•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신규 설치</li> <li>•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 폐쇄</li> <li>• 변경허가 대상을 변경신고로 같음<sup>9)</sup>할 수 있는 사항 변경</li> </ul>	변경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li> </ul>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소재지 변경<sup>10)</sup></li> <li>•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임대</li> <li>• 폐수를 위탁받는 자 변경</li> <li>•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전부 폐쇄</li> <li>• 그 밖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변경<sup>11)</sup></li> </ul>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9)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변경허가 대상을 변경신고로 같음(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10) 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

1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의 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참고]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분류

-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구분(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

종류	배출규모
1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 <sup>3</sup>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m <sup>3</sup> 이상인 사업장
3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m <sup>3</sup> 이상인 사업장
4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m <sup>3</sup> 이상인 사업장
5종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m <sup>3</sup> 미만인 사업장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폐수를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함. 폐수 배출량은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 포함)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

–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 함유수량+공정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 + 공정중 발생량

## [참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지역구분

-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 따라 허가 및 신고 여부가 결정되므로 허가/신고시 사전에 설치예정인 지역의 제한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분 적용

### 1)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I, II권역,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7항의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및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등 수질 민감지역, 「4대강 수계법」 제4조 수변구역, 「국토계획법」 제6조의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의 배출시설 제한지역 등으로 배출시설 및 공장의 입지가 제한되며 입지 가능 시에는 대부분 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대상이 됨

### 2) 일반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 3) 처리구역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에 위치한 폐수시설이 직접배출이 아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지역(공공폐수처리구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위치한 하수처리시설내로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지역(하수처리구역\*\*)

\*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수 있는 지역으로서(법 제2조 제18항)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시 지정한다(법 제49조 3항).

\*\*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 제14호).

- 폐수배출사업장 설치허가·신고 절차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절차는 크게

- ① 설치허가신청서 / 설치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② 허가 / 신고 서류 검토 및 허가증 / 신고증명서 발급,
- ③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 및 가동시작 신고,
- ④ 오염도 검사,
- ⑤ 조업 또는 개선명령등 이행의 단계로 구분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업무절차도

업무절차	고려사항
설치허가/신고 사전준비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수배출시설구분</li> <li>·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확인</li> <li>· 설치허가 및 신고대상 구분</li> </ul>
↓	
설치허가신청서/설치신고서 작성 및 제출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수배출시설 위치도,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작성</li> <li>· 원료 및 제품,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 명세서 작성</li> <li>· 배출허용기준 설정</li> <li>·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작성</li> <li>· 측정기기 부착대상 및 종류 검토</li> <li>· 설치허가신청서·설치 신고서 작성 및 제출</li> </ul>
↓	
허가/신고 서류 검토 및 허가증/신고증명서 발급 (지자체)	-
↓ 10일 이내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설치 (사업자)	-
↓	
가동시작 신고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동시작 신고전 업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확인, 환경기술인 임명)</li> <li>· 가동시작 신고, 가동시작 신고 서류 검토(지자체)</li> <li>· 시운전, 가동상태 점검(지자체)</li> </ul>
↓	
오염도 검사 (지자체)	-
↓	
조업 또는 개선명령 등 이행 (사업자)	-

### 3.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이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 아울러,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전에 사업자 또는 공동 방지시설 운영기구 대표자는 관련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최근개정사항] 폐수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개정, 2024.1.1. 시행)

- 일시적 수질 악화에 사업장이 대응할 수 있도록 폐수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 시, 당초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3시간 평균치’로 하던 것에서 ‘24시간 평균치’로 함

## 6 · 비점오염원<sup>12)</sup> 설치 및 운영

### 1. 관리 개요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하려 하거나 비점오염 유발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비점오염원 관리체계



### 2.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및 저감시설 설치

-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사업 및 시설

구분	신고대상 비점오염원	신고기한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li> <li>•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li> <li>•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부터 제17호까지 해당하는 사업<sup>13)</sup></li> </ul>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재작성·재협의 대상이 되는 경우</li> </ul>	

12)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13) 다만, 환경영향평가법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구분	신고대상 비점오염원	신고기한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지면적 1만㎡ 이상 사업장으로서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또는 14개 업종<sup>14)</sup>에 해당하여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li> </ul>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위의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li> </ul>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경우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치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17 참조

**[참고]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지정 범위 확대**

(물환경보전법 개정, 2021.11.23. 시행)

- 비점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불투수면적률\*이 25% 이상인 지역으로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자연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지정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범위에 추가

\* 불투수면적률: 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함)

※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평창 도암호, 안동시 안동댐 하류 등 전국 27개 지역을 지정('24년 기준)

14) ①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②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③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④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⑤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⑦제1차 금속산업 ⑧석탄·원유 및 우라늄 광업 ⑨금속 광업 ⑩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⑪음식료품 제조업 ⑫전기업·가스업 및 증기업 ⑬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⑭하수처리업·폐기물 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 7.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1. 관리 개요

- 공장에 소음<sup>15)</sup>·진동<sup>16)</sup>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특히 학교·종합병원 등의 주변지역 공장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리체계



15) 소음: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16) 진동: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2호)

##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지역 및 신고·허가제의 대상지역

허가 대상 지역	신고·허가제의 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li> <li>•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li> <li>•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li> <li>•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li> <li>•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주거형만 해당)</li> <li>• 100개 이상의 병실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li> <li>•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li> <l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li> <li>• 자유무역지정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 지역</li> <li>• 위의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지역</li> </ul>



### 3. 소음·진동방지사설 설치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진동을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방지사설을 설치하여야 함
- 소음·진동 방지사설 설치 면제 요건(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규칙 제11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기능·공정 또는 공장의 부지 여건상 소음·진동이 항상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다음 시설이 없는 경우
    - 주택·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 공장 또는 사업장
    - 관광지 및 관광단지
    -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 지식산업센터 또는 공장 밀집 지역에서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공동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동 방지사설 설치 가능(소음·진동관리법 제12조 제1항)

## 8 · 악취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1. 관리 개요

- 우리나라는 악취방지법에서 ‘복합악취’<sup>17)</sup>와 대표적인 악취오염물질 22종을 선정하여 ‘지정악취물질’<sup>18)</sup>로 관리하고 있음
-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고대상으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2.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정·고시된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정·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17) 복합악취: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18) 지정악취물질: 암모니아, 트리메틸아민,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 22종

**[참고]**

-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기배출 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하거나 같은법 제44조에 따른 휘발성유기 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악취방지법 시행 규칙 제9조제2항)

**[최근개정사항]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 등 악취관리 강화**

(악취방지법 개정, 2023.9.29.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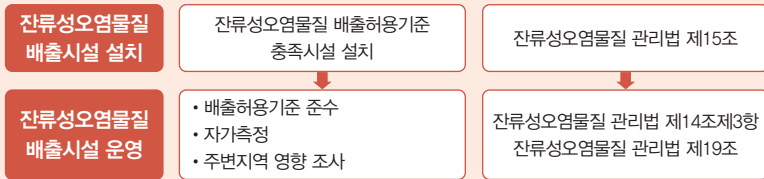
-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법 제6조제8항)
    -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법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 배출시설 운영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
  - 공공환경시설 악취관리 강화(법 제16조의2)
    -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악취기술진단 대상 시설로 추가
    - 악취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 악취검사기관 관리 강화(법 제19조제1항제4호)
    -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 근거 규정 신설
  -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법 제21조제1항)
    -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 (당초) 기술적 지원 : 환경부장관 ➔ (개정) 재정적·기술적 지원 :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의 장

# 잔류성오염물질, 토양, 폐기물

## 9. 잔류성오염물질<sup>19)</sup>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시설기준 외에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때에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하 ‘잔류성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체계



### [참고] 잔류성 오염물질 배출시설

제철 및 제강시설,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 소각시설 등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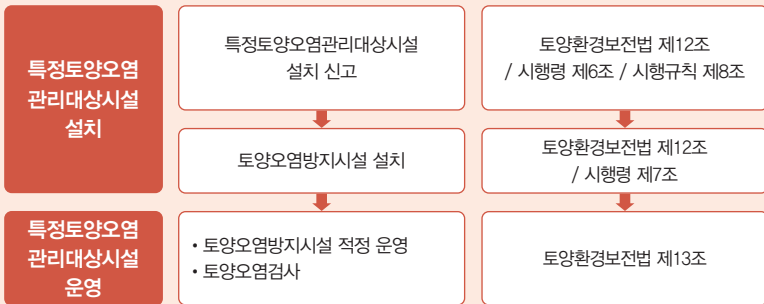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제철 및 제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량이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아크로</li> <li>•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소결로</li> </ul>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 제조시설 /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량이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아크로(유도로 포함)</li> <li>• 노상면적이 4.5㎡ 이상인 반사로</li> <li>•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이거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인 도가니로</li> </ul>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전로, 정련로, 배스로, 용융·용해로, 전해로, 건조로</li> </ul>
시멘트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3㎡ 이상인 소성시설</li> </ul>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이 1㎡ 이상인 이염화 에틸렌·염화비닐 제조시설</li> </ul>
소각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당 소각능력이 25kg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소각열회수시설 포함)</li> </ul>

19)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물질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

## 10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및 운영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 또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부지와 주변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체계



### [참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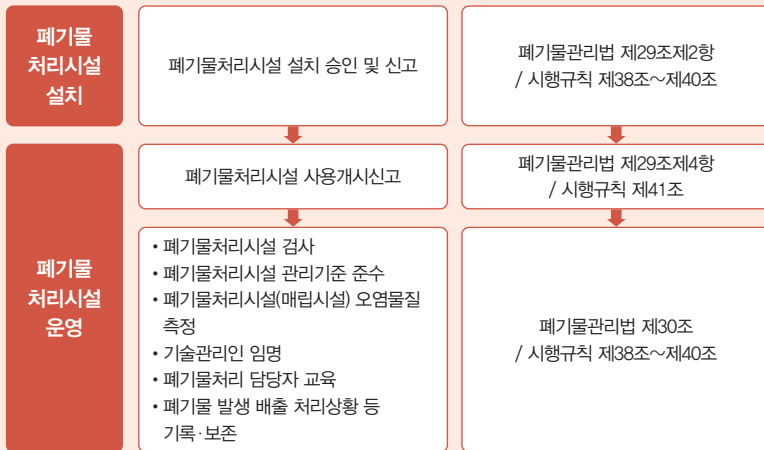
종류	대상범위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 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이동탱크저장시설은 제외)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 용제류의 경우에는 TCE, PCE 저장시설에 한함)
송유관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 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기타 위 관리대상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11 · 폐기물처리시설<sup>20)</sup> 설치 및 운영

### 1. 관리 개요

- 폐기물처리시설<sup>21)</sup>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끝내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체계



20)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21) '이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

##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및 신고

### • 설치승인 및 신고 대상

대상 시설	시설 능력	승인대상	신고대상
일반 소각시설	1일 처분능력	100톤 (지정폐기물 10톤) 이상	100톤 (지정폐기물 10톤) 미만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고온용융시설, 열처리조합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100kg 이상	100kg 미만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농축, 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	125kg 이상	125kg 미만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 ·절단·용융·용해·연료화·소성 (시멘트 소성로 제외) 또는 탄화시설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	100톤 이상	100톤 미만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	100톤 이상	100톤 미만
소각열회수시설	1일 재활용능력	100톤 이상	100톤 미만
매립시설	-	대상	비대상
시멘트 소성로	-	대상	비대상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건조시설, 열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	비대상	대상

### • 설치승인·신고 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시·도지사
① 광역폐기물처리시설 • 20이상의 시·도 및 20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 시·도가 설치하는 시설 ②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동일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 ③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대 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 유역(지방)환경청장장의 권한 외의 폐기물처리시설 ※ 동일 시·도의 2개이상의 시·군·구가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소관임

### 3.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 [사용개시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 공사 후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
- [정기검사]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의 폐기물처리 시설별 정해진 기간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 실시
- [관리기준 준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sup>22)</sup>에 따라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
- [오염물질 측정(매립시설)] 매립시설 설치·운영시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매분기 결과 보고
- [기술관리인 임명] 매립면적 3천3백㎡ 이상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600kg 이상 소각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시 기술관리인을 임명하거나 기술관리대행자와 대행계약 체결하여 운영



22)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참고] 폐기물 수출입 허가신고

- (배경)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여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폐기물을 수출하여 처리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화 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환경보호 및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대두
- (목적) 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출입 방지와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제도 비교

구분	허가제도	신고제도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목적	바젤협약 관련 폐기물의 수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수출입 허가대상 외의 폐기물에 대한 국내 관리 강화
대상	바젤협약 A목록 및 OECD 황색목록 등 유해 폐기물 88개 품목 고시(수출입규제폐기물)	허가대상 외의 26개 품목 고시(수출입관리폐기물)
절차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출입허가 및 관련국의 수출입허가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수출입자</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span>⬆️</span> <span>⬇️</span>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허가신청 및 허가</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유역·지방환경청</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span>⬆️</span> <span>⬇️</span>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동의요청 및 승인</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수출입국</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span>⬆️</span> <span>⬇️</span>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통지(업무협조)</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지자체·전산처리기구의 장</div> </div>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수출입 신고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수출입자</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span>⬆️</span> <span>⬇️</span>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신고 및 증명서발급</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유역·지방환경청</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span>⬆️</span> <span>⬇️</span>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통지</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bottom: 5px;">지자체·전산처리기구의 장</div> </div>
신청기관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수출) 배출사업장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수입) 재활용 및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	
처리기한	수출허가: 10일 / 수입허가: 8일	수출신고: 10일 / 수입신고: 10일
신청/발급	Allbaro System(올바로 시스템)	
전산처리	전자 인계서 작성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을 수출입, 운반 처리한 자에 대한 검사</li> <li>• 장부의 기록과 보존</li> <li>• 보고서의 제출 (폐기물을 수출입, 운반, 처리한 자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실적 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할기관에서 관계인에 대한 검사</li> <li>• 장부의 기록과 보존</li> <li>• 보고서의 제출 (수출입 신고자, 처리자, 재활용신고자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관할기관에 보고)</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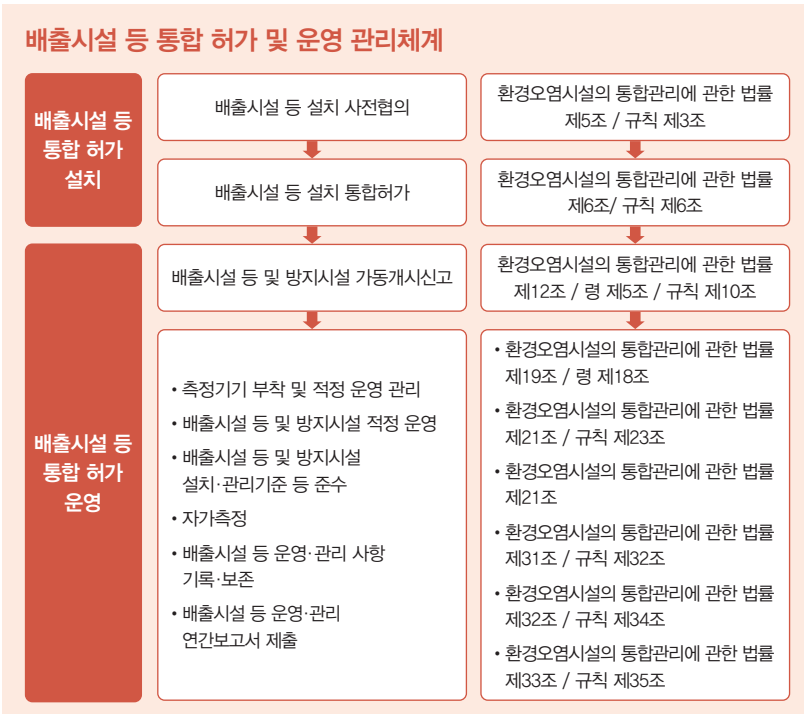
# 통합환경허가

## 12 · 배출시설 등 통합 허가 및 운영

### 1. 관리 개요

- 통합환경허가란 대기, 폐수, 폐기물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매체 별로 인허가, 관리하던 것을 사업장 단위로 하나의 환경허가로 종합하여 배출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 제도로, 2017년 도입
-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통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참고] 기존 배출시설 등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및 적용시기

- [대상 사업장] 발전업,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제조업 및 반도체·자동차 부품제조업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의 대기 또는 수질 1, 2종 규모의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먼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m<sup>3</sup> 이상인 사업장
- [적용 시기] 업종별로 2017년부터 단계적 적용(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는 업종별 적용일로부터 4년 이내 허가를 받아야 함)

통합관리 대상 업종	적용 시기
1. 전기업(35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화력 발전업(35113) 나. 기타 발전업(35119)	2017년 1월 1일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2017년 1월 1일
3. 폐기물 처리업(38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다만, 폐기물 처리업에만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만 단독으로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나.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2017년 1월 1일
4.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2018년 1월 1일
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합성고무 제조업(20201)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	2018년 1월 1일
6. 1차 철강 제조업(241)	2018년 1월 1일
7.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8년 1월 1일
8.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2019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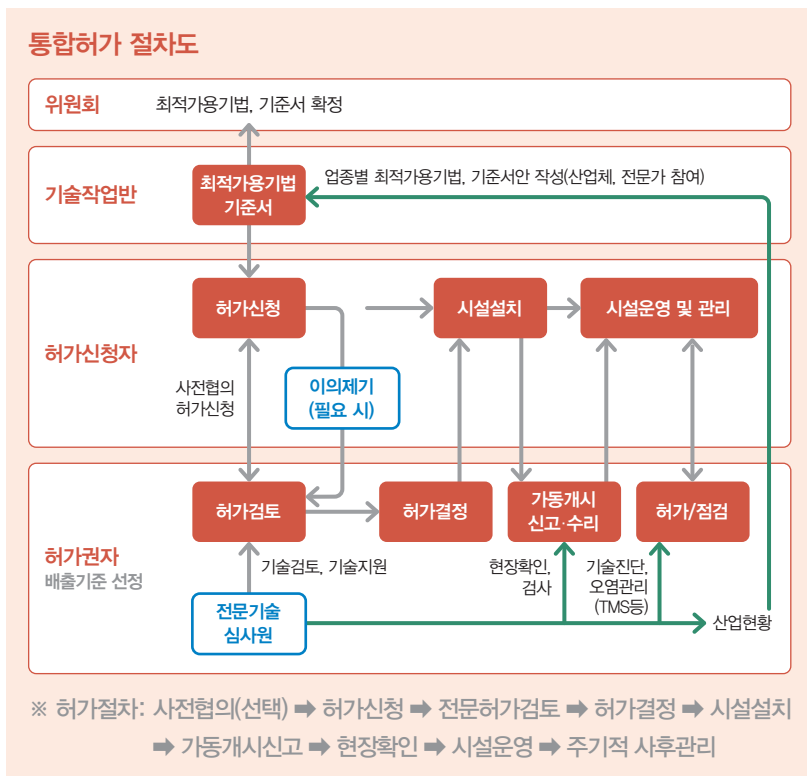
통합관리 대상 업종	적용 시기
8.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2019년 1월 1일
9.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20129) 나.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20131)	2019년 1월 1일
10.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석탄화학적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20119) 나.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20132)	2019년 1월 1일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1) 나.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2) 다. 계면활성제 제조업(20421) 라.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22) 마. 화장품 제조업(20423) 바.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사.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아.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자.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20495) 차.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2019년 1월 1일
12.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203)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2031) 나.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	2019년 1월 1일
1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펄프 제조업(1711) 나. 신문용지 제조업(17121) 다.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라.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마.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 바.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2020년 1월 1일

통합관리 대상 업종	적용 시기
1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2020년 1월 1일
15.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표시장치 제조업(2621) 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26221) 다.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2) 라.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 마.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1) 바. 전자감지장치 제조업(26295) 사.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2020년 1월 1일
16.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2021년 1월 1일
17.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2021년 1월 1일
18.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2021년 1월 1일
19.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2021년 1월 1일
20. 반도체 제조업(261)	2021년 1월 1일
2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2021년 1월 1일
22.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233) 중 시멘트 제조업(23311). 다만, 소성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한다.	2023년 7월 1일

- 1) 위 표에서 사용하는 업종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괄호 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 2)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위 표의 제3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3)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업종 중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이 있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해당 사업장의 업종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의 매출액이 나머지 업종의 각각의 매출액보다 클 것
  - 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시설에 배출시설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배출시설등에 대해 최적가용기법기준서의 적용이 가능할 것
- 4)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업종의 적용 시기 중 가장 늦은 시기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로 한다.
  - 5)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또는 증기를 공급하거나 그 사업장들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배출시설등을 설치한 사업장으로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장들의 업종 및 적용 시기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의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6) 해당 업종의 적용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통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신청 시기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로 한다.

## 2. 배출시설등의 통합허가



### • 배출시설등 사전협의

–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의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

※ 신청내용: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 허가배출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 배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 사전협의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sup>23)</sup>에 환경부장관에게 허가 등을 신청

23) 환경부장관은 사전협의의 결과 반영을 위한 조치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협의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 1년 이내에 배출시설등 통합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 신청을 1회 연장할 수 있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

### [참고] 허가배출기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할 때 지역의 환경질 수준 및 환경기준 등을 감안하여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한계 기준을 의미하며, 최대배출 기준<sup>24)</sup> 이하로 설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배출시설등 통합허가
  - 배출시설등 통합허가를 받으려면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사업장 일반현황, 배출영향분석결과, 허가배출기준안,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계획, 연료·원료 등 사용물질 정보, 사후 환경관리계획, 최적이용기법 적용내역 등 포함

### [참고] 최적이용기법(BAT) 마련 및 보급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최적이용기법(BAT)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 기법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을 말하며, 환경부장관이 사업장 적용 가능성, 오염물질등 저감효과,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기술작업반의 실무적 지원을 받아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
- 최적이용기법 기준서(BAT Reference)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운영을 위한 최적이용기법 참고문서로서, 산업현황 일반정보, 생산공정과 적용 기술현황, 에너지·자원소비·오염배출 특성, 최적이용기법 및 새로운 후보기술 등을 포함. 환경부장관이 사업장

24) 최적이용기법을 배출시설등에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등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로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업종별 최대배출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함(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및 별표 15)

에서 최적이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업종별 기술작업반의 실무적 지원을 받아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적이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

- 기술작업반(TWG)

업종별로 30명 이내의 환경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의견을 들은 후 임명하거나 위촉

### [최근개정사항] 시멘트업종 통합환경관리 대상 추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3.1.17., 시행 2023.7.1.)

-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시멘트 소성시설 관리를 위해 '23.7월부터 "소성 시설을 보유한 시멘트제조업"을 통합환경관리 대상으로 추가

- ➔ 기존 운영되던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유예기간(시행일로부터 4년) 내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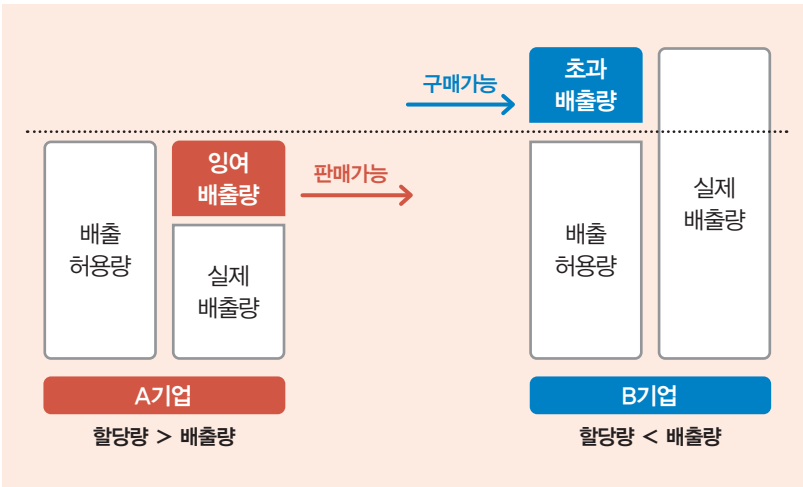
※ 상세 내용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환경정책동향(2023년 1분기, p14)』 (KOTRA 누리집)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13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 및 이행

### 1. 제도 개요

- (개요) 정부가 연 단위 배출허용총량(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범위 내에서만 배출하도록 허용하는 시장기반의 감축제도. 할당 대상 업체는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 여유분과 부족분을 시장거래를 통해 판매 및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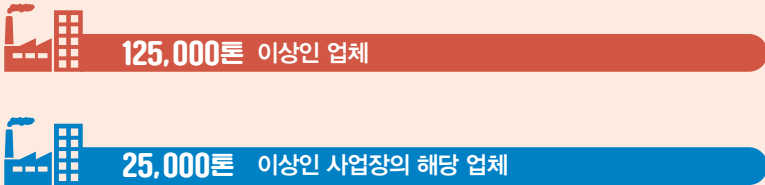


- (적용 대상) “기준년도 배출량”\*이  $\Delta 125,000$ 톤 이상인 업체이거나  $\Delta 25,000$ 톤 이상 사업장. 이 외, 자발적으로 지정을 신청한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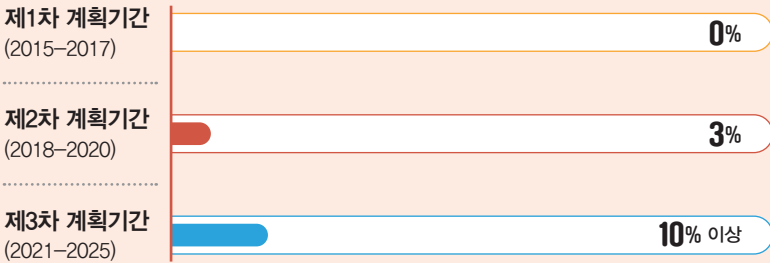
\*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

###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



### 계획기간별 유상할당 업종의 유상할당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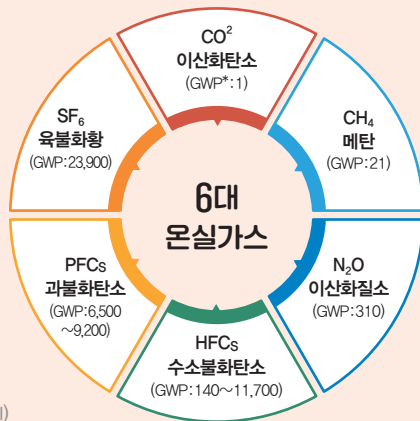
### 관리 대상 물질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배출량 + 간접배출량

- 직접배출량  
6대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 간접배출량  
전력사용량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 3. 주요 일정

- 사업자는 이행년도 배출량 명세서를 다음 해 3월에 정부에 보고⑨, 정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5월까지 인증배출량 통지⑩
- 다음 연도부터 새로이 적용대상이 되는 신규업체 등은 8월에 배출권 할당 신청서를 제출④하고, 정부는 10월에 이를 통지⑤

#### 배출권거래제 일정별 운영내용



# II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등 취급하는 기업

동 장은 '24.12월 말 현재 적용되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제품 안전법 기준으로 작성

➔ 이미 예고된 바에 따라, '25년 이후에는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세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행일에 적용되는 시행령·시행규칙을 따로 확인 바랍니다.

### 1.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 1. 개요(근거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 및 제3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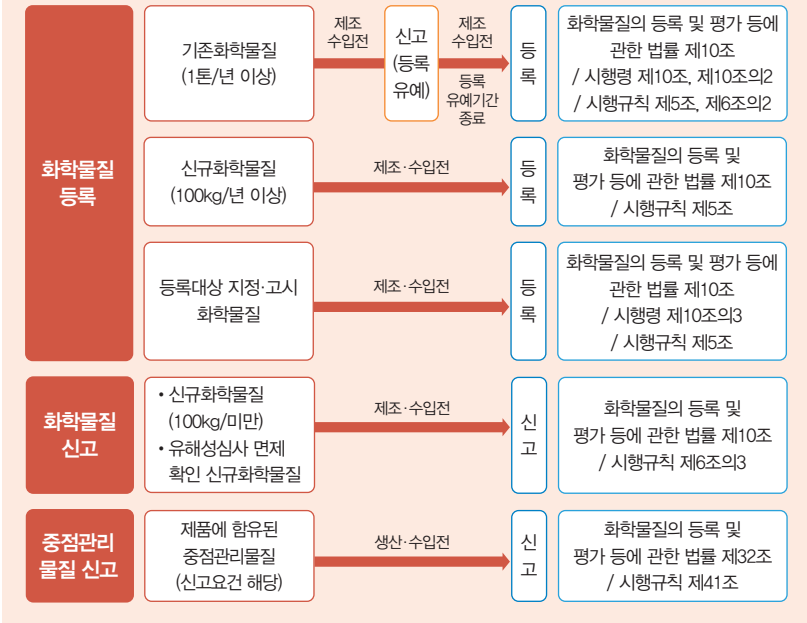
- 기존화학물질<sup>25)</sup> 연간 1톤 이상 또는 신규화학물질 등<sup>26)</sup>을 연간 0.1톤이상 ('25.1.1일부터는 연간 1톤이상)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등록
  -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거나 등록 기준량 미만 등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신고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sup>27)</sup>을 생산·수입하려는 경우 요건에 해당되면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

25) 기존화학물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①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노동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②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26) 기존화학물질(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3호에 해당)이나 신규화학물질은 아니지만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27) 중점관리물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①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사람 또는 동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③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④사람 또는 동물에 위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절차



\* 기준 수치는 24.12.31일까지 적용(25.1.1부터는 연간 1톤이상)

\*\* (유의!!!)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때마련” 중 : 시행령/규칙 근거 조항은 따로 확인



### [참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3.5.22. 제정, 2015.1.1. 시행)

- EU에서 화학물질과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제도(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도입하고,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평가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

\* △동 법 개정('24.2.6.)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변경('25.8.7~)△화학제품 안전법 마련(제정'18.12., 시행 '19~)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화학물질 함유 제품 관리는 해당 법에 이관

### [참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관할 기관 변경(24.4.30~)

- 화학물질 등록평가소관을 당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 2024.4.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및 시행 2024.4.30.)
-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
- \* 당초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 구분하여 신청하던 것에서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

- 종전 화학물질 정보확인시스템은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kreach, me.go.kr)에 통합하여 운영 중

\* (화학물질 정보확인시스템) 유해성 등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화학물질명 또는 CAS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 검색(국립환경과학원 운영)

\*\*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등의 법적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화학물질안전원 운영)

[www.kreach.me.go.kr]



**[최근개정사항] 유독물질 관리 기준 및 신규 화학물질 등록·신고 조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24.2.6. 개정, 2025.1.1.시행)

-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제2조제6호 개정, 같은조 제6호의2 및 제6호의3 신설, 같은 조 제10호 삭제)
-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기준을 연 0.1톤이상에서 연 1톤이상으로 조정(제10조제1항, 제4조제1호, 제4조제2호가목 개정)
- 유해성 미확인 물질 정의 신설(제2조제10호의3신설), 화학물질 안전성 담보를 위해 유해성 정보가 없으면 유해성 확인 전까지 유해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여 사업자 관리 책무를 신설(제5조제6항 신설)

## 2. 화학물질 등록

### • 기존화학물질

- 연간 1톤이상의 기존화학물질(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3호)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등록
- \* 등록 유예기간 중인 기존 화학물질은 사전 신고하면 제조·수입 가능  
(상세: 다음 페이지 화학물질 신고 참조)

### • 신규화학물질

- 연간 0.1톤 이상(25.1.1일부터는 1톤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등록

### •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등록

### [참고] 등록대상 화학물질 지정

#### ① 등록대상 화학물질 지정요건

-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개별 제조·수입자가 연간 100kg(25.1.1일부터는 10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 1톤
  - 개별 제조·수입자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10톤

#### ② 등록대상 화학물질 지정·고시 절차

- 등록대상 화학물질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

#### ③ 등록시기

- 등록대상 화학물질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최근개정사항]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규정 신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4.10.10. 시행)

- 화학물질 등록 등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추가  
(시행령 제11조제1항제9호)
  - \* ① 동일한 물질이 등록된 지 3년 경과하였고, ② 기존에 등록된 무게 범위 이하의 범위에 있으며 ③ 기 등록물질이 중간체 등에 해당하여 자료 제출을 생략한 경우 동일한 생략 사유에 해당할 것
- 신청인이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환경부장관(위탁기관 한국환경공단)이 검토하여 요건 확인 시 승인

**3. 화학물질 신고**

- “등록 유예 중”인 기존 화학물질
  - 유예기간에는 등록 없이 제조·수입할 수 있는데, 등록을 유예받기 위해서는 제조·수입 전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 제3항)

**[참고] 기존화학물질 등록**

-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

구분	연간 1톤이상 CMR물질 <sup>28)</sup> 또는 연간 1천톤이상 제조·수입 물질	연간 100톤이상 제조·수입 물질	연간 10톤이상 제조·수입 물질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 물질
유예 기간	2021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027년 12월 31일	2030년 12월 31일

28)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시 자료제출방법: 공동제출
  - (관련 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내용)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경우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등록신청 자료 일부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개별 제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
  
- 신고대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 신고대상 신규화학물질
    - 등록기준 미만으로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경우
    - 다음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 연간 0.1톤 이하(25.1.1일부터는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 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sup>29)</sup>하는 신규화학물질

29)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환경부고시 제2018-234호)

**[참고]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 면제 대상****(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2025.8.6.까지 적용]**

-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②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sup>30)</sup>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 ③ 다음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은 화학물질
  - i)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 ii)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 iii)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 iv)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생산공정을 개선, 개발하기 위한 경우
    -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 v)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sup>31)</sup>
    - 수평균분자량<sup>32)</sup>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30) 등록 또는 신고면제 대상 화학물질(환경부고시 제2018-234호)

31) 고분자화합물의 정의 관련 규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32) 수평균분자량의 정의 관련 규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

-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
-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sup>33)</sup>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 유해화학물질<sup>34)</sup>
  - 중점관리물질
  -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것으로서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 제외)

vi)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 등록된 화학물질
-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등록유예관련 신고된 화학물질
- 신고된 신규화학물질
- 등록대상 및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vii) 비분리중간체<sup>35)</sup>

viii)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sup>36)</sup>

ix)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33) 단량체의 정의 관련 규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34)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을 말함(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35) 비분리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36) 현장분리중간체: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8호)

### '25.8.7 예정(적극 행정으로 '24.12월 현재 적용 중)

-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②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 ③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

## 4.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신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노출 정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

### [참고]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2.7.29.~)

-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으로 △물용해도가 1mg/ℓ 미만이거나, △중간체\* 또는 공정속도조절제\*\* 용도에 한해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은 등록 신청 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2개의 시험자료(△어류급성 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이분해성)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1)

\*중간체(Intermediates):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 화학반응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공정 속도를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 국외 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성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수입량 0.1톤 미만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면제확인 신청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해당 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시행규칙 별표 5)

### [참고] 사업자(화학물질을 “영업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자)의 책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①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성 또는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②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교환·활용하고,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와 관련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함
- ③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안정성 및 화학물질 노출 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④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⑤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생산 시, 척추동물 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⑥ <신설 2024. 2. 6.> [시행일: 2025. 8. 7.]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2.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 인·허가 및 준수사항

[참고]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관리체계 개편(2025.8.7.~)

### 〈배경 및 논의 과정〉

- 불산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으로 강화된 화학규제 중 일부 일률과도하여 실효성이 미비한 것 등을 민·산·관 협의체인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여 개선체계 마련, '22년부터 공개토론 거쳐 개정(화학물질등록평가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24.2.6 개정, 25.8.7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세부사항은 시행일인 8.7일 이전 하위법령으로 마련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명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고 기준을 연 0.1톤에서 EU수준인 연 1톤으로 조정
  - 화학물질 신고 물질자료(연 1톤 미만) 대국민 공개 및 자료의 적정성 검토 절차 신설
  - 유독물질은 유해특성에 따라 세분화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독물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체급성유해성물질</li> <li>• 인체만성유해성물질</li> <li>• 생태유해성물질</li> </ul>

- 화학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허가·제한·금지물질을 제외

개정 전	개정 후
유해화학물질은 허가물질, 신고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한다.	유해화학물질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한다.

-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처분·수집·운반 등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관리
- 보호장구 착용 등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취급기준은 적용을 제외하는 등 현실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는 유해성에 따라 차등화
  - 물질 취급시설 중 극소량 취급하거나 유·누출 사고 발생 위험도 등이 낮으면 검사·진단 제외에 대한 근거 마련
  - 화학물질 취급량이 적거나 위험도가 낮은 경우 신고제로 전환

개정 전	개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급량과 무관하게 허가제(일부 예외)</li> <li>• 시설검사주기는 1~2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제로 관리하되, 소량은 신고, 극소량은 허가신고 면제</li> <li>• 위험도, 취급량에 따라 시설검사 면제 또는 시설검사주기 1~4년</li> </ul>

## 1. 관리 개요('24.12월 현재 하위법령기준)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 성분을 확인하고 해당 유해 화학물질별로 영업 목적에 따라 규정된 허가를 받아야 함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사항을 준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검사 및 안전진단 등의 사항을 준수

### [참고] 화학물질 확인

-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을 확인하고 확인명세서 등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제출하여야 함
    - 필요하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성분에 대한 증명을 신청
- ※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확인대상 물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 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 화학물질
  - 유독물질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금지물질 / 사고대비물질 (∼'25.8.6까지 적용)
- ※ '25.8.7일부터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인체만성유해성/생태계유해물질로 세분화
- 확인 제외 대상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sup>37)</sup>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 제출 서류

구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 확인명세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li> <li>• 다음 서류 중 화학물질 확인에 이용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li> <li>-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 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 확인 증명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li> <li>• 화학물질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함량, CAS번호 등이 적힌 성분명세서</li> </ul>

**[최근개정사항]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접수 및 처리기관 변경**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4.4.2.개정, 2025.1.1. 시행)

-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관리, 증명업무에 대한 위탁기관을 당초 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변경(제31조 3항제2~3호 신설 및 제4항제4항제4호 삭제)

37) 화학물질 제외 확인기준(환경부고시 제2015-162호)

## 2. 화학물질에 대한 허가 및 신고('24.12월 현재 하위법령기준)

- 1) 금지물질<sup>38)</sup> 제조·수입·판매 허가(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제2항)
  - 누구든지 금지물질의 취급은 불가하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 관할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전량 수출목적으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도 '25.8.7일부터 허가에 대한 검토 가능
- 2) 제한물질<sup>39)</sup> 수입허가(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제4항)
  -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할 수 없으며,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유역·지방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 '25.8.7일부터 삭제

### [참고] 수입허가면제 대상 제한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3항, 시행령 제10조)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측정·교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 가스 포함)

- 3) 허가물질<sup>40)</sup> 제조·수입·사용 허가(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항)
  -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경우,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으로 허가신청 가능

38)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 2019.11.25. 기준 60종

39)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2019.11.25. 기준 13종

40)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

**[참고] 허가면제 대상 허가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2항, 시행령 제9조)**

- 기계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연간 100kg이하로 제조, 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
-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4) 유독물질 등에 대한 수입신고(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제4항)**

- 유독물질<sup>41)</sup>\*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

\* '25.8.7일부터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

**[참고] 수입신고면제 대상 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3항, 시행령 제10조)**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측정·교정용으로 사용되는 표준가스 포함)
- 연간 100kg 이하의 유독물질 수입

**5)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수출승인(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항·제5항)**

-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함)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관할 환경청장에게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함

41)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2021.6.22.기준 1,056종

### 3.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준수사항

- 1) 취급기준 준수(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 2) 개인보호장구 착용(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
- 3) 진열·보관계획서 제출(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항)
- 4) 운반계획서 제출(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
  - 1회에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운반계획서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확인
  - \* 유독물질 5,000kg 초과, 허가제한-금자·사고대비물질 3,000kg초과
- 5) 유해화학물질 표시(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항)

#### [참고] 유해화학물질 표시

##### • 표시 대상

-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장소
-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 포함)
- 유해화학물질 용기·포장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sup>42)</sup>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용기나 포장에 유해화학물질 표시

##### • 표시 내용

- 명칭: 유해화학물질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 유해·위험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의 경우 명칭)·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4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라 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화학 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

####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sup>43)</sup> 설치 및 운영(‘24.12월 현재 하위법령기준)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제출(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 (작성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동일 사업장 내 취급시설 증설,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화학 사고 발생시 사업장 주변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조치내용)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참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면제 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구분	작성 면제 대상
1	연구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2	학교(「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별표 1 제5호라목 단서)
4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 사업장(별표 3의2, 환경부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
6	군사기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내 취급시설
7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 내 취급시설
8	항만시설(「항만법」 제2조제5호) 내 용기·포장 보관시설 중 자체안전 관리계획(「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을 수립, 관리청의 승인받는 경우
9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 내 용기·포장보관시설 중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하는 경우
10	농약 판매업자(「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가 사용하는 보관·저장시설
11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가 지정 보호구역(「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에 설치·운영하는 취급시설

※ 그밖에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도 작성 면제

43) 취급시설: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11호)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3, 시행규칙 제19조의4)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고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 고지

※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중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한함

고지내용	고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li> <li>•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 수질, 지하수, 토양, 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li> <li>•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추가 고지 (개별 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고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면통지: 우편이나 전자우편</li> <li>– 개별설명: 설명 후 서명날인</li> <li>– 집합전달: 공청회나 설명회 등 개최</li> <li>– 그 밖의 방법: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li> </ul> </li> </ul>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1항,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함

취급시설 배치기준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벽부터 건축물의 경계 또는 생태·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고시<sup>44)</sup>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및 별표 5</li> <li>•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시설별, 업종별 소량)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세: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참조 (확인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 관리법 &gt; 법령체계도)</li> </ul> </li> </ul>

4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64호)

### [참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특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취급 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어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안전성 평가 신청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신청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5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제3항·제4항, 시행규칙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4-188호) 제4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를 마친 경우 검사기관<sup>45)</sup>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시 취급시설별로 정기검사 또는 수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

4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구분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검사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시설 가동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허가 대상 : 설치검사결과서의 검사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li> <li>• 영업허가 비대상 : 설치검사결과서의 검사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li> <li>•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허가 대상 : 최종 안전진단일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li> <li>- 영업허가 비대상 : 최종 안전진단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학사고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li> <li>•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받은 경우</li> </ul>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 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li> <li>• 취급시설 검사결과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결과 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li> <li>• 취급시설 검사결과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수시검사 결과 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li> <li>• 취급시설 검사결과서</li> </ul>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기관<sup>46)</sup>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진단 실시 요건

-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준을 경과한 경우
  - 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4년(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 나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8년(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 다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 취급시설 위험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매 12년(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6) 자체 점검 및 기록·보존(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제1항제2항,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2항)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sup>47)</sup>하는 경우 주 1회 이상 해당 취급 시설 또는 장비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

4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47) 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경우도 포함

## 5.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등(‘24.12월 현재 하위법령기준)

### 1)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제28조제2항,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3항 및 별표 6)

-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참고] 유해화학물질 영업구분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
- 영업구분

업종	내용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전(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하는 영업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참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 시행규칙 제31조)

-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sup>48)</sup>,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
- 항만, 역구내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경우
-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 제외)을 사용하는 경우. 다만, 사업장이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 제외)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
-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사고대비물질 제외)을 사용하는 경우
-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각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sup>49)</sup>하는 경우

48)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1항)

49)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160호)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제4항·제5항, 시행규칙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 포함)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sup>50)</sup>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

**[참고] 도급인 의무사항**

- 다음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취급할 수 있는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 도급하여야 함
  -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 위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 해당 수급인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수급인에게 다음과 같은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보수기간의 단축
  -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보수, 다만,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
  -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의 지시
  -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 은폐
  - 위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50)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항, 시행규칙 제33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의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sup>51)</sup>

구분		인원																
유해화학물질 관리 책임자	-	1명(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이 책임자 겸임 가능)																
유해화학물질 관리 점검원	운반업	운반차량 20대당 1명 ※ 운반차량이 20대 이하인 경우 면제																
	그 외 영업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5">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th> </tr> <tr> <th>천톤미만</th> <th>만톤미만</th> <th>십만톤미만</th> <th>백만톤미만</th> <th>백만톤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인원(명)</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body> </table> <p>※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보관·저장업, 판매업(취급시설 없는 경우 제외) : 종사자 500명당 1명 추가</li> <li>▶ 사용업: 종사자 5천명당 1명 추가</li> </ul>	구분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천톤미만	만톤미만	십만톤미만	백만톤미만	백만톤이상	인원(명)	1	2	3	4
구분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천톤미만	만톤미만	십만톤미만	백만톤미만	백만톤이상													
인원(명)	1	2	3	4	5													

**6. 화학사고<sup>52)</sup> 발생시 조치사항**

-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지에 필요한 응급조치 실시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

51)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제2항)

52) 화학사고: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법 제2조제13조)

-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되, 화학물질별 유출량·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

**[참고]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21.4.2., 환경부 예규)

화학사고의 상황	즉시신고 기준
가.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15분 이내 즉시 신고
나. 화학물질이 제2호 이상으로 유출·누출된 경우(유해화학물질 5kg·L 이상)	15분 이내 즉시 신고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가능한 다른 종사자가 있는 경우 제외) 1) 화학물질 취급자가 현장에서 증상을 입은 경우 2)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인명구조를 하는 경우 3) 화학물질 유출·누출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밸브 개폐작업, 누출부위 봉쇄 작업 등)를 하는 경우	해당 사유 해소 시 빠른 시간 내에 신고 (통상 1시간 이내)
라. 화학물질이 제2호 미만으로 유출·누출된 경우 (유해화학물질 5kg·L 미만)	빠른 시간내에 신고 (통상 1시간 이내)
마.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된 경우(일반화학물질)	관련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빠른 시간내에 신고

※ 비고: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제외) 유출·누출량이 1kg·ℓ 미만이고 인명·환경 피해가 없이 방제조치가 완료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 2-2 · 화학물질 및 폐기물 수출·입 절차

### 1. 관리 개요

[참고] 화학물질 수출입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협약

국제협약	국제협약 개요	비고(관련 국내법)
로테르담 협약 (유해화학물질)	부속서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수입당사국에 사전 통지하고, 승인이 있어야 수입 가능	화학물질 관리법 등 <sup>①</sup>
스톡홀름 협약 (POPs)	협약국은 PCBs 등 부속서A에 등재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의도적 생산·사용을 금지하고 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 의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sup>②</sup>
바젤협약 (폐기물)	부속서에 등재된 금속, 금속함유 폐기물 등은 원칙적으로△발생국 처리△처리 능력 없는 곳은 이동 금지△이동 시 사전 통보 및 승인(수입국과 경유국)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등

※ 비고 : ① 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닌 화학물질은 해당 법률을 따름  
 ②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이기도 함

1) 화학물질 유해성 확인 및 등록(상세: 1.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 사업자는 취급하려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과 규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여 화학물질 명세서를 미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등록 대상에 해당되는 기존/신규화학물질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등록

\* 유해성 등 정보 확인 및 명세서 접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2) 화학물질 수입 시 허가신고(상세: 2. 화학물질 취급 시 인허가 및 준수사항)

- (허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대로 관할 환경청장 허가를 받아 수입

〈금지물질〉

- 금지물질에 해당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대로 수입하려는 경우
- ('25.8.7일부터) 1. 전량 수출용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2. 시험용, 연구용, 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려는 경우

- (신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대로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

〈제한물질〉

- ('25.8.6일까지) 제한물질 중 용도가 명확하고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
- ('25.8.7일부터) 전량 수출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제한물질〉

- (25.8.7 부터) 제한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 신고

〈유독물질〉

- ('25.8.6일까지)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 ('25.8.7일부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 (신고면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수입하려는 경우

3) 화학물질 수출 승인(상세: 2. 화학물질 취급 시 인허가 및 준수사항)

-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환경청장 승인을 받아야 함

**[참고]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 (개념) 세계 공통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그림문자로 표시
  - \* 언어 제약 없는 안전신호이며, UN 발의(92년)로 OECD 가입국에 권고, 우리나라는 '08년부터 적용
  - \*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를 사전예방 함은 물론 화학물의 사용, 운송, 폐기 등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
- (의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관련 법령은 GHS에 맞춰 운영 중



**2.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

**[참고]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

- (배경) 선진국에서 자국의 엄격한 규제를 피하여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폐기물을 수출하여 처리하거나 매각함으로써 유해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이 국제문제화 됨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환경 보호 및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 대두
- (목적) 폐기물의 부적절한 수출입 방지와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입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 폐기물 수출입 허가 및 신고제도 비교

구분	허가제도	신고제도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목적	바젤협약 관련 폐기물의 수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	수출입 허가대상 외의 폐기물에 대한 국내 관리 강화
대상	바젤협약 A목록 및 OECD 황색목록 등 유해 폐기물 88개 품목 고시(수출입규제폐기물)	허가대상 외의 26개 품목 고시(수출입관리폐기물)
절차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출입허가 및 관련국의 수출입허가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수출입자</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span>⬆️</span> <span>⬆️</span>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허가신청 및 허가</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span>⬆️</span> <span>⬆️</span>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유역·지방환경청</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span>⬆️</span> <span>⬆️</span>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동요청 및 승인</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span>⬆️</span> <span>⬆️</span>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수출입국</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span>⬆️</span> <span>⬆️</span>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통지(업무협조)</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span>⬆️</span> <span>⬆️</span>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지자체·전산처리기구의 장</div>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 수출입 신고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수출입자</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span>⬆️</span> <span>⬆️</span>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신고 및 증명서발급</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span>⬆️</span> <span>⬆️</span>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유역·지방환경청</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span>⬆️</span> <span>⬆️</span>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통지</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gap: 10px;"> <span>⬆️</span> <span>⬆️</span>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f4a460; padding: 5px; margin: 5px 0; text-align: center;">지자체·전산처리기구의 장</div>
신청기관	유역(지방)환경청	
관할구역	(수출) 배출사업장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 (수입) 재활용 및 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	
처리기한	수출허가: 10일 / 수입허가: 8일	수출신고: 10일 / 수입신고: 10일
신청/발급	Allbaro System(올바로 시스템)	
전산처리	전자 인계서 작성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기물을 수출입, 운반, 처리한 자에 대한 검사</li> <li>장부의 기록과 보존</li> <li>보고서의 제출</li> </ul> (폐기물을 수출입, 운반, 처리한 자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실적 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할기관에서 관계인에 대한 검사</li> <li>장부의 기록과 보존</li> <li>보고서의 제출</li> </ul> (수출입 신고자, 처리자, 재활용신고자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관할기관에 보고)

[참고]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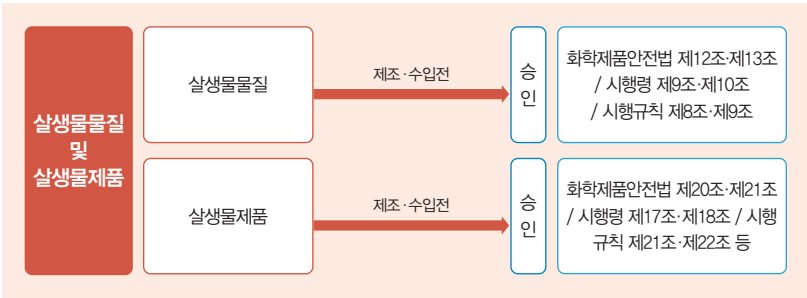
화학물질 수출입(화관법 민원24)	icis.me.go.kr
GHS(초록누리)	ecolife.me.go.kr
폐기물 수출입(올바로 시스템)	수출입폐기물관리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b>올바로</b> <a href="http://www.allbaro.or.kr">www.allbaro.or.kr</a>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 3.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 1. 관리 개요

(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제12~19조 및 제20~21조)

-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sup>53)</sup>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53)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7호)

### [참고] 살생물제품 유형

•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 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 살생물제품 유형 분류

분류	품목	분류	품목
살균제류 (소독제류)	1. 살균제 2. 살조제	보존제류 (방부제류)	8. 제품보존용 보존제 9.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10.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11. 목재용 보존제 12. 건축자재용 보존제 13. 재료·장비용 보존제 14. 사체·박제용 보존제
	구제제류		3. 살서제 4.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5. 살충제 6.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7. 기피제

## 2. 살생물물질 승인(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제19조)

• 살생물물질 승인

-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살생물 물질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은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 살생물물질 승인 유효기간

구분	유효기간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이면서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 중 둘 이상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5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 잔류성, 생물축적성, 독성 중 둘 이상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7년
그 외 일반적인 살생물물질	10년

### [참고] 물질승인기준 및 물질승인기준완화 적용대상

- 물질승인기준(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제2항)
  - 살생물물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 살생물물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 살생물물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耐性)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 물질승인기준완화 적용대상(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제3항)
  -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제한되어 사람 또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은 경우
  -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물질이 없어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 기존살생물물질<sup>54)</sup> 승인 유예
  - 기존살생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로 지정·고시 되는 경우 유예 기간 동안에는 물질승인을 받지 않고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사전신고하면 제조·수입할 수 있음
  - 아울러, 승인유예기간이 고시된 후 1년 이내에 살생물물질승인신청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유예기간 내에 물질승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3. 살생물제품 승인(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제28조)

- 살생물제품 승인
  -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아울러, 살생물제품 승인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 살생물제품 승인 유효기간

구분	유효기간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생물제품 승인가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li> <li>• 살생물물질 승인가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li> </ul>	3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생물제품 승인가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li> <li>• 살생물물질 승인가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li> </ul>	5년
그 외 일반적인 살생물제품	10년

54)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

### [참고]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법률 제17103호, '20.3.24. 개정, '21.1.1. 시행)

-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종료일까지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음

※ 근거: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

(법률 제17103호, '20.3.24. 일부 개정, 시행일: '21.1.1.)

구분	승인유예기간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sup>55)</sup> 부터 2년 이내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제조·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조·수입금지일 또는 지정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위의 살생물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최근개정사항] 미승인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20382호, '24.3.19 개정 및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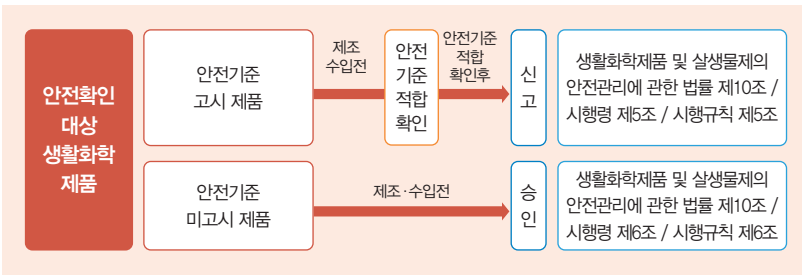
- 법률 제15511호의 부칙 일부 개정 : 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있다.
  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품: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2.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안전기준 및 표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처리제품: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55) 승인유예기간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지정·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

## 4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

### 1. 관리 개요(근거 :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경우에는 시험·검사기관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신고를 하여야 함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sup>56)</sup>한 생활화학제품(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4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분류	품목	분류	품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56)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환경부 고시 제 2024-139호)

분류	품목	분류	품목
코팅제품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여가용품 관리제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슴기용 소독·보존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접착·접합 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방향·탈취 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보존·보존 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염색·도색 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슴기용 생활화학제품 6. 가슴기용 보존처리제품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 • 안전기준 적합확인

-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
- 적합확인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종료 후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함

### [참고]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 및 살생물제 승인 등 시험·검사기관

- 환경부장관은 다음 기관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 및 살생물제 승인 등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제2항)
  - 한국환경공단(KECO)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TI)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시험·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TI시험연구원, KOTIT시험연구원

### • 안전기준 적합확인 제품 신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경우 제품정보·성분·함량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신고

---

##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1. 환경행정절차 요약

#### < 일반적인 흐름 >

구분	외국인 투자자	환경행정 주요내용	비고
1.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설치시설 종류 및 대략적인 생산 규모)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면적 이상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므로 사전에 대상 여부 확인</li> <li>- 원료·생산물의 수입·수출 가능 확인 (폐기물) 바젤협약 등 (화학) 로테르담 협약 등</li> <li>※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등 협약이행을 위한 국내 법으로 검토</li> </ul> </li> <li>• 상기 사항 이행을 위한 환경인허가 종류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지 가능 여부 (국·계법, 건축법 등)</li> <li>- 주변 환경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만㎡이상 사업은 기후영향평가 포함 ('22.9월~)</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단지 입지 시에는 환경영향평가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내</li> <li>* 유치 기관은 산업단지 계획 변경, 환경영향 평가변경 여부를 사전에 판단</li> </ul> </li> <li>• 폐기물 수출입 허가 등 행정절차는 설치전 (가동개시 이전)</li> <li>• 자본 조달 시 녹색분류 체계 부합성 확인 등 (투자자,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환경책임투자 플랫폼, 등 참조</li> </ul> </li> </ul>
2. 설치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적인 투자 규모·시설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지시설 세부 규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분야 안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 폐수, 폐기물, 화학물질, 온실가스 등</li> <li>※ 일정 규모 이상 통합허가대상 업종은 통합허가(환경오염 시설법 시행령 별표1)</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통합허가, 대기오염총량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 감안</li> </ul>

구분	외국인 투자자	환경행정 주요내용	비고
3. 운영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동개시 시에는 환경 법령에 맞는 인력 고용·모니터링 장비 설치 완료 등</li> <li>환경법령에 따른 적정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동개시 신고 〈예시〉 - (대기) 굴뚝 배출 전 - (폐수) 방류구 방류 전 ※ 방지시설, TMS 등 적정 설치</li> <li>(인력) 법정인력 고용 대기·폐수·폐기물 등</li> <li>(모니터링)법정장비 수질·대기 TMS 설치/자가측정 등</li> <li>(인벤토리·보고) 온실가스·화학물질·대기오염물질, 폐수, 폐기물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법상 가동개시 신고는 배출·방지시설이 가동되기 전에 이뤄져야 함</li> <li>ESG·탄소중립 이행 국내 자본 조달 시 녹색분류체계 부합성 확인 ※ 그린워싱 예방 배출정보 공개,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공개 등(권장)</li> </ul>
4. 자진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법령에 따른 적정 폐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전폐쇄신고(시설, 원료, 연료, 폐기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쇄 전까지 환경피해 예방, 안전 유지</li> </ul>

### 〈 인허가 개요 〉

구분	관련 법령	관할 기관	비고	
시설 허가 (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등	시·도	-
	비산배출 (HAPs)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 2 등	환경청	-
	비산먼지 발생 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등	자치단체	-
	폐수 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등	시·도	-
	비점오염원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등	환경청	-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등	자치단체	-
	약취 배출시설	약취방지법 제8조 등	시·도 / 대도시	약취관리지역내 약취배출시설 /약취관리지역외 지정고시된 시설

구분		관련 법령	관할 기관	비고
시설 허가 (신고)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5조	해당 기관	대기/폐수 배출 시설/폐기물 처리 시설/처리업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등	자치단체	-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사전 승인(신고)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환경청 *유의	-
	통합환경 허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제6조 등	환경부	다수 환경법에 의한 인허가를 통합*
화학 물질 ·제품 취급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록·신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 등	화학물질 안전원 /한국환경 공단	-
	중점관리물질 제조·수입 "신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32조 등	환경청	신고요건 해당 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신고"(안전 기준 고시)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등	한국환경 산업 기술원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승인"(안전 기준 미고시)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 등	화학물질 안전원	-
	살생물 물질 제조·수입 "신고"	화학제품안전법 제12조 및 제13조 등	화학물질 안전원	-
	살생물제품 제조·수입 승인	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 및 제21조 등	화학물질 안전원	-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비산배출 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소음·진동관리법」의 소음·진동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원 △「약취방지법」의 약취배출시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의 배출시설 △「토양환경보전법」의 특정토양오염 관리 대상시설△,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구분	관련 법령	관할 기관	비고
화학물질 취급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성분명세서”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등	한국환경공단 -
	유해화학물질 중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 수출 “승인”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등	환경청 원칙적 취급 불가,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에 한하여 허가)
	유해화학물질 중 제한물질 영업 “허가”·수입 “허가”·수출 “승인”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제20조 등	환경청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 등	환경청 -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 영업 “허가”, 수입 “신고”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등	환경청 -
폐기물	규제대상폐기물 수출허가	폐기물관리법 제6조	환경청 -
	규제대상폐기물 수입허가	폐기물관리법 제10조	환경청 -
	관리대상폐기물 수출입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환경청 -
배출총량	대기오염물질 총량사업장 허가 및 배출 허용총량 할당	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 및 제17조	환경부 시·도 -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지정	배출권거래제법 제8조 및 제8조의2, 제9조 등	환경부 -

구분	관련 법령	관할 기관	비고	
영업 허가	폐기물처리업 (지정)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환경청	-
	폐기물처리업 (일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시·도	-
	폐수처리업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시·도	-
	유해화학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이 아닌 것을 말한다.) 영업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등	환경청	제조·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업

## 2 · 환경분야 주요 영업

구분	절차 개요	근거	관할 기관	비고
<b>폐기물 처리업</b>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려는 경우		-	-	-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확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lt;영업 종류&gt;      - 종합처분업                      - 수집·운반업    - 중간재활용업                      - 중간처분업    - 최종재활용업                      - 최종처분업    - 종합재활용업                 </div>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환경청 (지정폐기물) 시도(그 외)	-
2) 재활용환경성 평가에 대한 승인		-	국립환경과학원	(재활용 환경성 검토대상인 경우만)
3) 영업에 대한 허가(신고)		-	환경청 (지정폐기물) 시도(그 외)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적합통보 받은날로부터 2년 이내
<b>폐수처리업</b> 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허가	「물환경보전법」 제62조, 시행규칙 제90조, 제90조의 2, 제91조	시·도	<수탁 가능 폐수> 상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1조
<b>환경전문공사업</b>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환경기술산업법 제15조, 제16조, 같은법 시행령제22조의 4, 제22조의5,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시·도	<b>공사종류</b> 대기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b>환경컨설팅회사</b> “환경컨설팅 회사”로서 환경 기술산업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등록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4, 제16조의7, 시행령 제22조의8, 시행규칙 제33조의10제1항, 제33조의11, 제33조의 12	시·도	-
<b>측정대행업</b> 대기배출사업장 등에서 실시하는 자가측정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시·도 대도시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구분	절차 개요	근거	관할 기관	비고
<b>대기측정기기 관리대행업</b> 대기배출사업장에 설치된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대행업 무를 하려는 경우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제32 조의3, 시행령 제19조의3, 시행 규칙 제37조의3, 제37조의4, 제37조의5	환경청	굴뚝자동 측정기기 등
<b>수질측정기기 관리대행</b> 폐수배출사업장에 설치된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대행업무	등록	물환경보전법 제32조, 물환경 보전법 제12조3항 또는 하수도법 제7조	환경청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 측정기기 등
<b>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b> 상수도관망관리 대행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4항, 제38조의6, 제38조의8, 제38조의10	환경청	상수도관망의 세척, 상수도관망의 누수 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 상수도관망시 설의 점검·정비 등
<b>환경영향평가업</b>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부터 제61조, 제70조 부터 제72조, 시행령 제68조 ·제69조, 시행 규칙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	환경영향 평가협회 (등록 접수)	환경영향평가 : 특정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각종 요인들에 대해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그 환경 영향을 분석하여 검토
<b>통합허가대행업</b> 통합환경허가사 업장의 허가서 작성을 대행하는 영업	등록	환경오염시설법 제11조의2, 시행령 제4조의2, 시행규칙 제9조의2	환경부	-

### 3 · 환경분야 주요 지원사업

※ 아래에 소개된 사업의 상세내용(지원 요건/지원 규모(해당 연도 예산)/신청기간 및 지원절차 등)과 다른 환경분야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산업원 스톱서비스(<https://www.ecosq.or.kr>) 및 매년 초 환경부 누리집에 게재되는 해당 연도 「정부지원 환경사업 종합안내서」를 참고바람

구분	지원 개요	비고
ESG(환경경영컨설팅) 컨설팅지원	환경경영체계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수준 향상 및 녹색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동종업계가 모여있는 조합·협회 단위로 업종 및 기업별 맞춤형 환경컨설팅 지원	신청, 접수 : <a href="http://www.ecosq.or.kr">www.ecosq.or.kr</a>
<b>금융지원</b>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환경산업분야)	중소·중견기업인 환경산업체를 대상으로 정비·정지 등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장기·저리융자)	신청, 접수 : <a href="http://www.ecosq.or.kr">www.ecosq.or.kr</a>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녹색전환분야)	중소·중견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온실가스 저감시설 설치자금 지원	신청, 접수 : <a href="http://www.ecosq.or.kr">www.ecosq.or.kr</a>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대출이자 지원)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경제활동을 추진하는 기업	신청접수: 취급은행 영업점 (24년: KDB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수출입은행)
환경책임투자 활성화 (제반비용지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당 경제활동 추진을 위한 녹색채권 및 녹색유동화증권 발행 시 이자일부 및 외부검토투비용 지원(시범사업)	신청, 접수 : <a href="http://www.ecosq.or.kr">www.ecosq.or.kr</a>
<b>설비 녹색전환 지원</b>		
스마트생태공장 구축	오염배출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사용 저감 및 생산 효율화 등을 종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설비개선 비용을 통합 지원	신청, 접수 : <a href="http://www.keco.or.kr">www.keco.or.kr</a>
<b>환경산업 육성 지원</b>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녹색산업분야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자금과 교육, 멘토링,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	신청, 접수 : <a href="http://www.eco-startup.kr">www.eco-startup.kr</a>

## 4 · 표시광고 시 유의

- (일반사항) 제품의 제조·판매자 등은 제품 환경성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함(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10 등)

### [참고] 일반적인 제품에 대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제한

- 제품의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없어야 함
  -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이 없어야 함(상세 : 표시광고법)
-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 못 알게 할 우려가 없어야 함
  -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이 없어야 함 (상세 : 표시광고법 제3조,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2)
- (살생물제품) 제조·수입·판매자는 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쉽게 알도록 안전성 정보를 표시해야 함(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

### [참고] 살생물제품에 표시해야 할 안전성 정보

(관련 : 법 제28조제2항)

-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 명칭·기능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의 의도적 포함 여부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포장과 광고의 문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생활화학제품 법제34조)

**[참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규정**  
(관련 : 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4조)

- (사용금지)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기타 유사한 표현
- (포함할 문구) 사용에 따른 “위해 방지”를 위해 아래 각호를 포함
  -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 제품의 효과·효능(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증명서, 시행규칙 제6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알리는 문구 등

➡ 보다 상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http://chemp.me.go.kr))

## 5 · 순환자원 인정·지정

- 순환자원 개념 : 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규제 대상 면제로 분류
- 순환자원 요건

###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① 지정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X
② 유해물질을 지정폐기물 기준(「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 별표 1) 이상 함유한 폐기물	X
③ 「폐기물국가간이동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	X
④ 환경부·산업부 고시에 따른 순환자원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폐기물	X
⑤ 수집·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악취 또는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폐기물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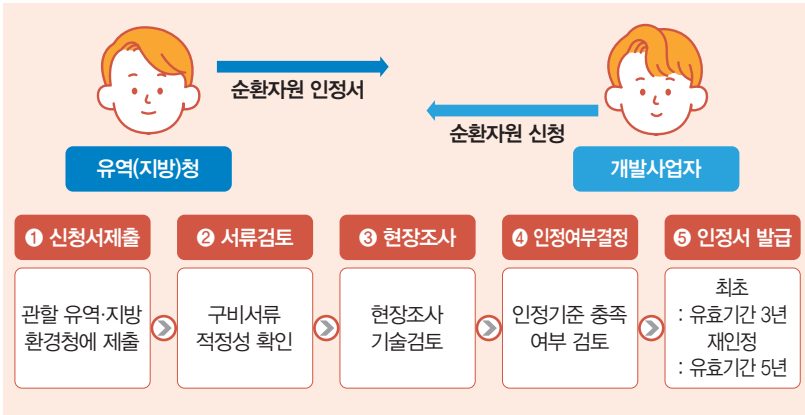
### 2.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①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 폐기물	O
② 유가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 거래되고 있는 폐기물	O
③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 폐기물	O

### 3.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① 소각매립 또는 해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X
②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 등의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X
③ 성토재, 복토재 등 토양·지하수·지표수에 접촉 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X
④ 이물질 기준 등 환경부 고시에 따른 순환자원의 기준 및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	O

- 인정 : 사업자가 환경청에 신청하여 요건에 합당하면 인정



- 위 외에, 요건에 합당한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제도”도 시행 중으로 폐지·폐알루미늄 등 적용('24~)

	품목명	순환이용용도	순환이용방법 및 기준
지정품목(예시)	폐금속캔류	금속성 제품 제조	이물질 제거 및 압축, 종류별 분리

- (유의) 사람의 건강과 환경유해가 없도록 ①모든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준수사항 ②품목별로 정해진 순환이용 용도·방법·기준 등 세부기준을 모두 지켜야 규제 면제

➡ 보다 상세한 사항은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http://www.re.or.kr))

## 6 · 주요 환경정보 누리집

구분	누리집명	누리집 주소	비고
1	KOTRA	kotra.or.kr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분야별 정책가이드(年단위) 등 게시
2	환경기술산업 원스톱서비스	www.ecosq.or.kr	환경산업지원, 환경정책금융 지원, 환경인증 등 신청
3	환경부 환경민원 포털	minwon.me.go.kr	환경부 소관 법정민원 접수·안내 포털(과학원, 유역(지방) 환경청 연락처 등 포함)
4	환경부	me.go.kr	-
5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6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정부 지원사업 내역
7	외교부	www.mofas.or.kr	비철로테르담 협약 등 조약문 게재 ( ) 외교정책 ) 조약·국제법 ) 검색
8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eiaass.go.kr	-
9	화관법 민원24	icis.me.go.kr	화학물질 수출입 등 절차 안내/ 화학물질 관련 법정민원 접수 등
10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me.go.kr	생활화학제품관리
11	통합환경허가시스템	ieps.nier.go.kr	통합환경허가 제도 안내/통합 환경허가(법정민원) 접수 등
12	사업장대기오염물질관리시스템	www.stacknsky.or.kr	대기오염총량제
13	폐기물 적법처리 현장정보 관리 시스템(올바로)	www.allbaro.or.kr	폐기물 수출입 등 절차 안내/ 폐기물 관련 법정민원 접수 등
14	수질원격감시체계	www.soosiro.or.kr	-
15	수탁폐수처리전자인계인수시스템	www.mulbaro.or.kr	-
16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	www.lnsn.or.kr	-
17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www.konetic.or.kr	-
18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시스템	ngms.gir.go.kr/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현황/제도 소개 및 업무처리

KOTRA자료 25-002

## 2025 외국투자가를 위한 환경정책가이드

발행일	2025년 1월
발행인	강경성
발행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디자인/편집	(주)레드코볼소커뮤니케이션
주소	서울시 서초구 한릉로 13 (06792)
전화	1600-71119(대표)
홈페이지	<a href="http://www.kotra.or.kr">www.kotra.or.kr</a>
ISSN	3058-8421 / 3022-5043(e-ISSN)

Copyright ©202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20  
25

